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

2019. 12. 12. 운영지원단

I. 개요

■ 일시: 2019. 12. 12.(목) 10:00~18:4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한일(간사), 고원혁(서기)

■ 배석자

- 이흥구, 박병민(이상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김정숙(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견종 철(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강지웅, 정현미, 한종환, 양석용, 김보현, 유제민(이상 운영지원단원), 박상우(인사운영심의관), 도형기(인력운영심의관)

II. 의사개요

-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배석자 소개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9월 회의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2차 회의를 하게 되었음. 오늘 회의는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사실상 첫 번째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논 의할 사항이 적지 않지만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를 통해 설치된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논의 안건 또는 경과보고 안건, 지난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등에 기초보고를 부탁한 안건, 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의한 안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2.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관련 공지 및 보고

가. 법원행정처 인원 현황 상세 보고(서면보고)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제가 이 통계를 요청 드린 것은 법원행정처 뿐만 아니라 전체 법원 내에서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었음
 - 보시다시피 법원행정처 구성 인원 중 1~3급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고, 6급 이하 직급에 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의 한 지표가 됨은 물론, 우리 사회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함
 - UN Women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은 51명으로 전 세계에서 12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핀란드의 경우 여성 총리가 전체 19명의 장관 중 12명을 여성으로, 4명을 30대로 임명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 성평등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의 성평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 회의 정도에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나 안건 제안 여부를 좀 더 고민하여 제안 드리도록 하겠음

○ 의장

-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오늘 보고한 인원 현황은 법원행정처의 인원 구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현재 법 관은 물론 법원공무원들에게도 법원행정처는 그리 선호하는 부처가 아니고, 또 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행정처 근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 하다보니 여러 사정상 여성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어쨌든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급 이하의 경우와 달리 3급 이상에 여성이 없



다는 점은 본인 역시 굉장히 안타까움. 또한 금년 7월 1일자로 2명의 이사관 승진 및 9명의 부이사관 승진 인사가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단 한 명의 여성도 명단에 들지 못했는데, 이는 이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의 성평등 여건상 고위직 인사에 들 여성 대상자 자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희망적인 점은 4급 이하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7급의 경우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임.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4~5년 뒤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리라 생각함. 법관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30%가 조금 넘고, 단독판사 이하까지 포함하면 여성이 약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고위직에 들 만한 여성 후보군은 충분히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본인의 취임 후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 가능하면 여성을 우대하고 종전처럼 여성을 편한 보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선의 중요 보직에도 보내는 방향으로 인사를 했는데,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음
- 그 동안 여성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육아 문제로 사 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업무와 조직을 재편 성하는 것이 우리 법원이 할 일이라 생각함
-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신 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람

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 설치 경과 보고

- 한종환 기획조정심의관,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코트넷 게시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게시판, 위원 전용 공간) 설치 경과를 보고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위원들이 전용 공간에 안건 제안사항을 올리면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들 간
 에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음
 - 오승이 위원



- 안건제안 게시판을 만든다면, 게시글을 올렸을 때 메일링서비스 기능이 지원되면 더 좋을 것 같음
- 이미경 위원
 - 각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도 볼 수 있었으면 함
- 김진석 위원
 - 내부위원의 경우 코트넷 게시판에 게시된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요지를 열 람할 수 있는데, 외부위원들도 위와 같이 공개된 자료는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분과위원회 논의 내용을 일단은 보지 못하도록 해두었을 것임. 분과위원회에서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상황을 자문회의 위원들에게 공개하려면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 다만, 코트넷에 게시된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 법행정자문회의 게시판으로 옮겨 외부위원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 3.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이흥구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에 관하여 1. 경력대등부 확대 여부, 2. 확대 범위(적절한 사무분담), 3. 구성기준, 4.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흥구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논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수는 많아지고 단독판사의 수는 적어지는 상황이 되다보니 부장판사가 단독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일반 판사들은 단독 재판을 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문제의



식에서 시작을 했지만, 본 논의의 취지는 결국 '합의부 재판은 그 구성원들 간의 대등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을 강조하고자 함

-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민사합의 3개부, 민사항소 15개부, 형사항소 6개부에서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실시 하였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력대등부 확대 여부 및 그 범위, 경력대등부의 재판장 고정 여부, 재판장 변동 시 주심과 재판장일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 논의가 필요함
- 경력대등부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없다면, 일단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 경력대등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경력대등재판부는 3인의 판사가 같이 기록을 검토하고 같이 토의를 진행하며 같이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었고, 재판부 첫 미팅에서도 그 런 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그 안이 채 택되지 못했고, 우리 재판부는 처음에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하는 안을 채택하여 운영하였음. 이렇게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하여 운영해 보니 처음에는 신건 합의 단계부터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법정 진행이 생동감 있게 이루어지기도 하였 으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보다 오히려 구상금 사건처럼 기록의 양이 적 고 난이도가 낮은 사건에서 재판장과 주심 간의 의견충돌이 심해지고 재판부 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다시 절차협의를 거쳐 재판장과 주심 을 일치시키는 안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음
 - 재판장과 주심을 일치시킨 이후 그 전에 비하여 단독화 경향이 심해졌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임. 그러나 비록 단독화 경향이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3인 간에 신건 합의부터 속행 합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의부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함
 - 재판장 고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비록 비슷한 기수라고 하더라도 재판장을 고정 시키는 경우 재판장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장은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재판장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재판장과 주심 은 분리시키는 것이 단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이라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지원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함.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소속되어 실질 합의를 하다 보니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판보조인력이 필요함. 현재 재판연구원이 임명되어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는데, 1심에서 적응과정을 마친 재판연구원이 2년차에 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기존에 습득된 능력이 고등법원으로 이전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성이 있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실질 합의를 위한 경력대등재판부의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시 범실시 단계를 넘어 모든 재판부가 경력대등재판부가 되는 경우, 어떤 재판부는 경력이 많은 법관으로 구성되고 다른 재판부는 경력이 낮은 법관으로 구성되어 재판부 간 편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기수, 연령, 성별 등 재판부 구성원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결론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경력대등부가 아닌 합의부의 경우에도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실질 합의를 위해서는 재판보조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프랑스의 연구담당관 제도처럼 기존의 판례 및 학설을 참조하여 판결의 방향을 일종의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법관들이 합의를 하는 방안을 참조할 만한 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재판보조인력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항소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1심합의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구성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무분담 기간은 원칙대로 2년 또는 3년까지 장기화할 필요가 있고, 재판장은 변동시키되 재판장과 주심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
-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부에만 경력대등재판부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예 정하고 있는 소송절차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있어 경력대등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효율적인 심리 계획 수립, 증거채부 기준의



정립, 증거조사 기법의 개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구성원 간 실질적 합의, 결론의 설득력 제고 등에서 기존 합의부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비록 각급 법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지방법원 1심 합의부의 경우에도 경력대등재판부를 상당한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건 관리, 심리 계획, 증거채부 기준, 증거조사 기법의 개발 등 그 동안 우리 사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소송법 상의 여러 가치를 경력대등 1심 합의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재판부 구성방식이 바뀌고 재판부의 목표도 새로 추가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신건만을 배당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
 - 이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함
 - 경력대등재판부는 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에 기하여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경력대등재판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기여하는 측 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력대등재판부가 기존의 합의부와 달리 실질적 합의를 통해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람
 - 최한돈 위원께서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효율성 때문에 처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짐작하건대 경력대등 재판부의 경우 조정·화해율, 상소율, 종국률이 개선되는 반면 처리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송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건의 재판이 늦어진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음. 그런 면이 경력대등재판부에 부담이 되고, 처리율 제고를 위해 경력대등재판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음. 처리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경력대등재판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력대등재판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지금의 재판연구원을 300명에서 600명 정도로 대폭 늘려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
 도 해결되리라 생각함. 자료집을 보면 법원사무관 활용 방안까지 검토하셨던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토하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됨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는 쟁점을 정리한 후 판결문을 작성할 판사를 정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경력대등재판부에서 3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쟁점 정 리가 된 이후에 판결문을 작성할 판사를 정하고 계속 사건을 진행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의장

- 비록 6개월간의 통계이긴 하나, 경력대등재판부의 경우 처리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평균 처리일수는 개선된 측면이 있음. 합의부의 경우 292일과 275일, 항소부의 경우 245일과 226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보면 비록 처리율은 떨어지지만 사건은 콤팩트하게 진행하는 느낌이 듦
- 다행히 올해 재판연구원을 300명으로 증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당국과 협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의견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부장판사가 총 54명이 있고, 6명의 부장판사로 총 2개의 경력대등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 참석 전에 경력대등재판부를 희망하 는지 확인해보니 현재까지 총 8명이 경력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고 함
- 새로 부임하는 부장판사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는 없으나 향후 경력대등재판부는 확대가 될 것 같음. 하지만 현재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가 사무분담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여부를 사무분 담위원회의 자율에 두게 되면 경력대등재판부 확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경력대등재판부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 법원장이 독려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력대등재판부를 가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경력대등재판부를 꾸 렸으면 좋겠다는 강한 권고를 하거나 대법원에서 법원 사무분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의장

- 모두는 아니지만 현재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사무분담 위원회에서 재판부 구성 방안까지 논의하는 경우가 있음
- 경력대등재판부 확대를 전제로 하여 경력대등재판부를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게 각급 법원에 부장판사 인사를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방식이고, 위원들께서 경력대등재판부 확대에 관하여 의견을 모아주시면 사무분담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보다는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음
-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내년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여부에 대하여 각급 법원에 문의한 결과 50~56개 정도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대로 시행된다면 지금의 2배 규모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운영될 것임
- 특정 유형의 재판부, 예컨대 민사항소부를 일괄적으로 경력대등부로 운영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현재 경력대등부가 시범실시 중이어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또한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법관들이 형사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경력대등부까지 도입된다면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함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경력대등재판부를 경력 16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실제로 1심 또는 2심 재판을 받아보면 합의부 구성원 간 경력 차이가 나는 경우 재판장이 재판을 이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합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라는 전언을 간접적으로 듣기도 함. 이런 기존의 방식보다는 3인의 중의를 모아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력대등재판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에는 전적으로 찬성함
- 다만, 경력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판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경력이 많



으나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젊지만 성실하게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력만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업무처리 속도 등을 고려하여 능력과 열정이 비슷한 분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법관평가와 같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무분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1심에서는 젊은 판사가 많이 있으니 경력 있는 재 판장과 함께 1심을 구성하되,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과 달리 주심판사뿐 아니라 다른 2명의 부장판사들도 실질적으로 재판진행과 합의에 참여하여 충실하게 심 리하는 것을 재판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경력대등재판부는 항소 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심 합의부까지 확대하기에는 재판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구성 기준은 희망 여부를 1순위로 하되 경력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면 될 것 같고, 재판장이 고정되는 경우 아무래도 재판장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장은 변동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재판장이 변동되는 경우,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재판장과 주심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경력대등재판부 확대에 찬성하나, 이와 관련하여 판사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인사 문제로 인해 경력대등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측면은 있지만, 실질 합의를 통해 좋은 재판을 실현한다는 경력대등재판부의 제도적 취 지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인사 문제만 강조되는 경우 판사들 간 공감대 가 형성될 수 없음
 -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대법원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각급 법원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각급 법원판사회의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 확대 여부, 확대 대상 등에 대해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원활하게제도 확대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함. 법원장님의 경우에는 판사회의에서 사무



분담의 기본원칙을 정할 때 경력대등재판부와 관련된 부분을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하여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구체적인 논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경력대등재판부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 3인 합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광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부와 합의부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또한사무분담 2년, 재판장 변동, 재판장 변동 시 재판장과 주심의 분리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김순석 위원께서 델라웨어 주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델라웨어 주의 사례처럼 판결서를 쓸 판사를 나중에 전하는 방식이 심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방식이 경력대등재판부의 단독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고등법원에서도 2011년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을 고법판사로 선발하여 고등법원 재판부의 합의부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와 같은 맥락에서 고등법원에서도 경력대등부 확대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은 판사가 재판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만 구성되는 재판부와 부장판사 직무대리로서 재판장을 할 수 있는 고법판사로만 구성되는 재판부를 어느 정도 확대해서 고등법원에서 경력대등부가더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새로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함

○ 의장

- 고등법원에서도 시범적으로 고등부장 3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물론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부장 3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부 등 총 4개 재판부에서 실질적인 대등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판결문을 작성할 판사를 나중에 정하는 방식이 획기



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판사 수가 확대되어 3명의 판사가 똑같이 한 사건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재판 진행의 신속성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인데 지금 여건에서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판사 개인은 물론 법원 전체의 재판 부담이 가중되어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우려됨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국민들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 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경력대등재판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재판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 경력대등재판부는 국민 입장에서 너무나 환영할 만한 제도인데 업무량 때문에 확대가 어렵다면, 아까 제기되었던 형사소송 재판의 전산화라든지 로클럭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도 지금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재판 건수가 과연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 실시하는 데 찬성하고, 이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법원 합의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함. 또 시범실시 결 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숫자로 시범실시 케이스를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함
- 경력대등재판부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력대등재판부의 판사 1명당 재판연구원 1명을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 나, 다른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낮은 처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판사 가 대폭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체적으로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여부 및 범위, 사무분담 기간, 재판장이 고정 되어서는 안 되고 재판장과 주심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특별한 이견 이 없는 것 같음
- 경력대등재판부가 법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충실한 사실심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고 법관 인사를 강제로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자발적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위해 법관 증원, 형사소송의 전자화, 재판연구원 확충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경력대등재판부 확대를 전제로 하되, 어떻게 확대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가능하면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확대 실시를 하도 록 하겠음
- 의장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제시가 있었음
 - 대법원장님께서 이번 인사에 맞추어서 확대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 안건이 2년에 걸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니만큼,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권고를 하는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 항소부만 할지 합의부로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광만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함. 지난 회의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만 경력대등부를 시행하게 되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배치되는 결과가 되어 인력 자원 배분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오히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력대등부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작년에 경력대등부의 배당 비율을 일반 재판부에 비해 낮추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각급 법원사무분담위원회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경력대등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재판부에 비해 배당 비율을 적절히 낮추고, 이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건만 배당하는 등 제도의 첫 발을 잘 디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원칙적으로 항소부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부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1심 합의부의 경우에도 3개 재판부에서 경력대등부를 시행하고 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경력대등부 확대 등에 관해 강한 권고를 해 달라는 것이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신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권고를 하는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음. 권고 없이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지원자가 적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배당 감축, 재판보조인력 증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다. 결정사항

-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
 - 2019년 시범실시된 경력대등재판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 진 합의부)는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하여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하 였고,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함
 - 경력대등재판부가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배치, 형 사기록 전자화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함
 -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민사 사물관할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한정 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확대 범위(적절한 사무분담)

○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함이 바람직함. 다만 사건의 성질,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 가능함

■ 구성 기준

○ 경력대등재판부는 희망을 우선으로 하여 구성하되,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경력대 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때 법조 경력, 연령, 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함이 바람직함

■ 바람직한 운영방안

○ 경력대등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함이 바람직 함. 한편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 분리가 바람직함



4.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 진행상황 보고

- 김정숙 분과위원장,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진행 개요 및 논의 경과, 향후 일정을 보고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과 유제민 사법지원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전문법원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문제해결법원'이라는 용어는 낯설고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으므로 '회복법원' 등 쉽게 인식되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다른 용어를 고려했으면 좋겠음
 - 유제민 심의관
 - '문제해결법원'은 미국의 'Problem Solving Court'를 번역한 것으로 강학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미국에서도 문제해결법원 안에 마약법원, 사회적응법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박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음
 - 의장
 - 향후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명칭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 5.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방안(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김정숙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방안에 관하여 1. 규범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2.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법률 및 규칙 개정 병행 또는 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청각장애인의 재판 진행을 위해 수어통역이 필요한데, 그 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상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당사자가 예납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



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일부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통해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사실 편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정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함. 다만 입법이 되기 전에 어떻게 국고부담을 시킬 지가 문제인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의 의견은 대법원규칙 또는 예규 개정을 통해 국고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과 운영지원단장의 답변이 있 었음

○ 이광만 위원

- 법률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법원규칙의 개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대법원규칙의 제정 근거인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고, 오히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처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임
- 제안된 법률개정안이 입법화 된 후에는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법률개정안이 의원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법원규칙 개정을 미리 준비할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규칙 개정이므로, 예산당국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국가재정법상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을 하는 경우 추계자료와 재원조 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함

○ 의장

- 규칙 개정에 대해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후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규칙 개정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의장

-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입법이 바람직하지만 현 단계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내면 될 것임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운영지원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하돈 위원
 - 본인이 속한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이 문제가 되어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에 따라 통역인을 지정한 후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비용 보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구조 전담재판부가 따로 있어 그런 것인지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보름 정도 지난 지금까지 비용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 이런 경우 실무상 소송구조로 해결해 온 것이 실무인데, 만일 대법원 규칙으로 국고부담을 한다고 하면 기존 실무와 같이 소송구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음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소송구조 결정이 있는 경우 일반회계가 아니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비용이 지출되므로, 재판부 입장에서 소송구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
 -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국가재정법이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광만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유준 위원
 - 소송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과 소송법 개정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입법 방식 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음. 현재 경제적 여건과 패소 가능성이 없는 점만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요건을 추가하여 수어통 역비용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경우 굳이 소송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림

○ 이광만 위원

- 소송구조는 그 결정에 법원의 재량이 있는 반면 장애인 지원은 재량 없이 전적으로 국고부담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운영지원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일단 현 상황에서 대법원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으시는 경우,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으로서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 에 결국 올해 안에 규칙 개정이 힘들다는 것인지?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양해해 주면 진술보조인 관련 예산을 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기획재정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함
 - 애초에 수어통역비용의 국고부담을 염두에 두고 진술보조인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있을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중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항목은 사법부 입장에서도 계속 발굴해야 하므로, 이런 점을 강조한다면 항목 추가 또는 규칙 개정에 관하여 충분히 예산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음. 다만 이를 위해 당장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운영지원단장과 김정숙 분과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본인이 광주 재판 방청을 할 당시 수어통역을 방청인들이 볼 수 없어 재판장님의 허가를 얻어 자체적으로 수어통역을 한 경험이 있음.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고 취지를 고려한다면 수어통역 범위에 방청인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를 정리한 자료



도 있으니 이 자료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음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위원들께서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도를 설계해 주시면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든 후 그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에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김정숙 분과위원장
 - 청각장애 등 의사소통 장애 일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입법안도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발제하고 검토를 하긴 했으나, 회부된 안건 자체가 일단 소송당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과 같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방청인 등에 대한 수어통역 방안 등 일반적인 사법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분과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소송당사자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방청인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본 안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칙만 개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재판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규도 새로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일단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규칙을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에 관련 예규 준비를 회부하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의 국고부담 방안 마련 필요성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속기, 녹음, 녹화 및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국고부담화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상 가능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예규 제·개정 안건 추가 회부
 - 대법원규칙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이후 적정한 운영을 위한



예규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관련 예규 제·개정 안건을 추가로 회부함

6.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에 관한 검토

가.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 기초보고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검토 및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함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와 관련하여 1. 현행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제도개선 추진 여부, 2.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1차 회의 이후 법관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예상 외로 법관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라 고 생각하고, 특기할 점은 종전에 비해 변호사단체의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이 주목할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임. 특히 젊은 법관의 경우 변호사평가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다는 인식의 변화가 느껴졌음
 - 오늘 회의에서는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한변협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통 2% 정도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에 비하여 본 설문조사에 3~4%의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매우 많은 변호사가 참여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하고 싶음. 향후 이런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독려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14개 지방변호사회 내에 법관평가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고, 대한변호 사협회에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및 검사평가특별위원회가 있음. 아직 검사평가 특별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



나, 법관평가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고, 매년 계속적인 수정작업을 거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 자료집 141쪽에서 현행 법관평가의 문제점으로 '변호사와 법관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 정도, 변호사가 해당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실제 관여하였는지 여부, 평가에 관여한 사건 결과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가 이루어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록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한 항목표에는 빠져있으나 실제 설문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번호, 재판장의 성명 및 소속 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실제 관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개인적인 친분 정도 항목과 관련해서는 연수원 동기 여부, 대학 동문 여부 등을 기재하는 방식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음
- 판결 결과의 유·불리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판사 및 변호사,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하여 더 엄밀한 검증작업을 거치는 등 향후 계속해서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 근무평정의 근거자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함. 법원장으로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지만 사건처리 건수, 상급심 법원의 시각 등으로 평정자료가 한정되어 있 는데, 차제에 변호사평가뿐 아니라 소송관계인, 법원공무원의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음. 법관 근무평정의 기초자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는 변호사평가 결과를 평정자료로 삼을 때가 되었고, 다만 정교한 제도설계를 해 야 할 것임
- 한 가지 첨언하면, 요즘 법관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근무평정의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평정주체를 법원장 1인으로 하기 보 다는 각급 법원에 법원장, 동료 법관, 가능하면 변호사까지 포함하여 구성된 평 정위원회에서 평정을 하되, 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 및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 는 등 향후 법관 근무평정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통령도 여론의 평가를 받는 등 우리 사회에 평가를 받지 않는 직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제도화하는 데 찬성하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공식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면 법원 내에 평가위원회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잘못된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연구하고, 초기에는 참고자 료로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한 후 인사에는 신중하게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사사건은 원·피고가 있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반면 형 사사건은 피고인만 있기 때문에 형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민사와 형사 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또 변호사평가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법관평가를 통 해 재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는 물론 방청인, 교수, 일반 단체도 참여하는 일종의 국민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평가의 주체, 방식, 주관기관, 평가단의 구성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은 법원행정 처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 시범실시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오늘 회의에서는 가능하면 법 관평가의 필요성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보면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이 가장 낮은 평가를 주는 등 평가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음. 하지만 익명으로 진솔하게 강의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박균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적절하게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학생들은 계속 강의를 듣지만 당사자는 극히 일부 시간만 법관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서 행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경우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그런 취지에서 변호사회에서 하는 현행 법관평가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지금 제도권으로 들이는 것은 시기상조라생각하고, 법관평가가 조금 더 정교화되고 법관들도 평가방식에 대해 익숙해진후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박균성, 김순석 두 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
 - 법관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는 주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대 법원장, 대법관과 달리 판사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 대법원장에 의한 임명 외에 다른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 10 년의 연임제가 시행되는 상태임. 그러므로 법관평가의 주된 목적이 판사의 민주 적 정당성을 강화 내지 보장하고 충실한 연임심사를 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법 관이 자기 재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판 수요자로부터 의견을 전달받는 데에 주 안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법관평가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음
 -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회에서 하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이 받은 후 대법원에서는 연임심사에 활용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근 무평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법원장이 재량으로 정하는 정도의 활용방안이 적절하 다고 생각함. 지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음
 - 또한 변호사들이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성명까지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법 조일원화 확대에 따라 향후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는 물론 변호사에 대한 법관 의 평가 역시 시행하여 축적된 자료를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변호사회에서 법원에 보낼 때는 평가서를 작성한 변호사의 성명을 삭제하나, 변호 사들이 평가서를 변호사회로 보낼 때는 성명을 기재하므로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



은 아님. 또한 변호사회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숫자가 모여야만 평가로 인정하고 있음

- 법원에서 평가 결과를 전보, 보직, 승진 등 어느 인사 영역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평가자료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음. 법원장들의 법관평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변호사회 입장에서 당장 법관평가를 내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같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임. 같이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 다음 법원 내 평정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경우 연임심사 등 인사의 모든 측면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송관계인에 의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 함. 소송관계인의 평가는 대리인인 변호사의 평가와 크게 차이가 없고, 보통 평생에 한번 재판을 경험하는 소송관계인에 의한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관계인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평가의 기준을 만들 때는 일반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평가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객관성과 공정 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꺼려하는데, 지혜를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음
- 법관평가를 받아본 결과 본인의 재판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재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법관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평가를 법원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관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전체 판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차적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여건이 마련된 후 인사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법관평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평가 주체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학계, 특히 일반국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 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검찰, 법원공무원 등에 의한 법관평가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평가 결과의 인사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열어둔 채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 해야 함
- 수준 높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부의 법관평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수준 높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법원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따라서 법관에 의한 변호사 등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이 법조일 원화 취지에도 부합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 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미흡한 감이 있지만, 그 부분이 보완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외부평가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음. 연임심사를 위한 자료로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법관들 스스로가 자신의 재판을 되돌아보기 위한 자료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외부평가에 대해 해당 판사들도 의견을 내는 등 평가에 대한 방어방법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예를 들어 증거채부에 엄격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평가가 냉혹해질 수 있을 텐데, 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 평가를 객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평가가 시작된 것은 법관 인사 때문이 아니었고, 사실 법정에서 막말을 하는 판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차원이었음
- 본인이 평가 결과를 몇 년 동안 보면서 느낀 점은 우수법관이나 하위법관으로 선



정되는 분이 매년 비슷하다는 점임. 다만 우수법관의 폭은 넓은 반면, 하위법관은 정말 동일한 몇 분이 계속해서 선정되고 있음. 이는 한 사람이 아닌 최소 5명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만 우수법관이나 하위법관으로 선정하는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임

○ 하지만 변호사회 자체만으로 진행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논의 내용을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되는 경우 평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음.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 때 외부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관련 분과위원회 등 준비기구의 구성 여부, 구성원, 주관 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초보고를 받는 것이 어 떨까 싶음
- 법관평가의 주체(변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이광만 위원
 -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판사들이 내부평가 외에 외부평가를 거부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외부평가를 겁내거나 기피하려는 생각도 적어진 것 같음. 그런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 평가라는 용어를 '외부' 평가로 바꾸는 것이어떨까 싶음
 - 이찬희 위원
 - 외부평가라 하더라도 결국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변호사밖에 없음
 - 이미경 위원
 - 이찬희 위원의 말씀에 이견이 있음. 변호사가 물론 잘 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보는 시각과 일반국민이 보는 시각은 다르고, 국민도 당사자로서, 또는 피해자의 지원자 내지 방청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지켜봄. 또한 젠더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법관이 법적 합리성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지 말고 향후 준비위원회 등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음

○ 이찬희 위원

-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만 판사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이념 등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민감한 사건, 시국 사건에 대하여 극과 극의 평가를 하는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경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일단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평가조차도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불신하는 분들이 계신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에 의한 평가를 하되, 평가기준을 만드는 데는 변호사의 시각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1단계로 필요함
- 변호사에 의한 평가도 10년이 흐른 지금 겨우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의한 평가도 그런 정도의 어떤 축적이 이루어진 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국민을 평가주체에서 무조건 제외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님

○ 윤준 위원

 본인이 평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으나 이런 것은 장기적 인 과제로 놔두고 오늘은 변호사 평가가 필요한지,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여부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했으 면 좋겠음

○ 김진석 위원

- 윤준 위원의 의견에 동감함. 관련 주제를 모두 논의하는 경우 무한정 확대될 수 있음. 물론 이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외의 주체에 의한 평가가 불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님. 다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거친 후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오늘은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부분에 관해서만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을 전제로 법관평가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인 결의를 하기 보다는, 법관평가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결



의를 하고, 추후 구성될 준비기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음

○ 이미경 위원

-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나, 변호사에 의한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국민의 평가여야 한다는 본인의 의견을 회의록에 소수의견으로 남겨주시길 바람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도 15년 동안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매년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어떻게 하는지, 2차 피해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평가하고 발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한 앞으로는 NGO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림

다. 결정사항

-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점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다만,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기구 등의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
- ※ 13:00경 오찬 관계로 정회
- ※ 14:00경 속개
- 7. 2020. 1. 기준 각급 법원의 정원 배정 경과 보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견종철 분과위원, 2020. 1. 기준 각급 법원의 법원공무원 정원배정 기준 및 구체적 인 정원배정 결과를 보고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각급 법원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경우 가능하면 많은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



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임

- 자문회의에서는 정원 배정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정원이 배정되었는지, 나아가 사법연수원 기능 축소로 인해 인원조정이 되는 것처럼 기준과 다르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유준 위원
 -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인원 배정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필요성을 소명해서 건의를 하면 반영이 잘 되어 수원지방법원은 크게 불만이 없음

○ 의장

-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배정은 적절히 되고 있다고 보임
- 현재 법관의 경우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법원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 이어서 정원 배정 등에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정원 배정 기준 및 구체적인 배정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해 큰 이 의는 없음
 - 다만 인원 배정에 대해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인사명령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음. 다음부터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금 더 일찍 개최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일정에 맞추어 인사명령 일자를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음

○ 의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함. 법원공무원 인사명령 일자는 사실 고정되어 있으므로, 2020. 7. 1.자 인사를 할 때는 미리 자문회의를 거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광만 위원



• 여러 안건들의 최종적 시행 전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음. 필요한 경우 온라인 의결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의장

- 사실은 정원배정을 하고 인사명령에까지 이르는 일정이 굉장히 빠듯함.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새로운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제도가 있는 것처럼 1심이나 2심에서도 학설 및 판례, 외국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 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음

○ 의장

- 법관을 무한정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보조인력에 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
- 다만 지금 보고받으신 사항은 재판연구원과는 상관없는 법원공무원 정원임
- 8.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 검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견종철 분과위원 기초발제
 -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 산결산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제정을 제안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자료집 189쪽에 나온 것처럼 사법부의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는 대 법관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임



- 지금은 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 역할 중 하나가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절차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산하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예산결산협의회를 신설하자는 취지임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간사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결산협의회에서 바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분과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이 향후 기 재부와의 협의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할 듯한데, 분과위원회를 거 쳐야 한다는 내용이 내규(안)에 누락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간사

■ 규칙상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서 검토하려면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해당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가정 하에 내규(안)을 만들수 없었음

○ 의장

• 190쪽에 있는 개선 후 일정을 보시면 5월 1일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온라인 의결에 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건은 본인이 상정하고 같은 날 온라인 의결을 통해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자함. 이후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0. 5. 14. 사법행정자문회의임시회의에서 심의한 후 대법관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음. 그런 점을 전제했을때 내규(안)에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은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같음

다. 결정사항

■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기존 예산결삼심의위원회의 예산·결산 관련 심의기능이 중복 되므로, 기존의「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자문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결산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기로 함

9.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견종철 분과위원 기초발제
 -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과 관련하여 1. 대구가정법원 청사 이전 신축 여부, 2. 대 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3.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대구가정법원 청사 이전 신축 여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대구가정법원과 몇 개 법원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당장 증축할 수 있는 규모는 작은 반면 제대로 된 곳으로 이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둘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 7년 내지 10년을 기다릴 것인지, 당장의 청사 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에 작은 규모로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내긴 했지만 사법행정자문 회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기존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부지로 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 의장
 - 부지확정, 토지수용, 설계, 공사 절차를 고려하면 빠르면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센터 같은 특수 시설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구가정법원의 경우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구법원종합청사 부지를 확정하는 데만 5년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리기 힘듦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견종철 분과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유준 위원
 - 대구서부지원 사건 추이가 늘어가는 추세인지? 사건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면 테니스장에 별관을 증축해서 일단 가정법원이 사용하다가, 나중에 독립 부지가 확보되면 가정법원이 그리로 이전한 후 서부지원이 증축 별관을 사용하는 방안 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듦
 - 견종철 분과위원
 - 대구가정법원과 가장 비교되는 곳이 부산가정법원인데, 부산가정법원의 협소도
 가 더 크긴 하지만 사건 수는 부산가정법원보다 대구가정법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대구서부지원의 사건 추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테니스장에 증축을 한다고 해도 최대 연면적이 7,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센터나 케어센터를 증축 부지에 설치하고 기존 공간은 그냥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음. 다행히 대구가정법원의 경우후견 사건 등을 제외한 이혼사건은 크게 늘지 않았음
 - 일선 법원장님 대부분이 윤준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음
 - 윤준 위원
 - 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 별도의 부지로 대구가정 법원이 이전할 때까지는 대구서부지원과 대구가정법원 모두 불편을 겪을 수밖 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별도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맞겠지만 당장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듦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외국 법원의 경우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법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웨덴 출장 및 미국 연수를 가서 보니 실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음. 여러 방안이 적절치 않다면 임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있을 것 같음

○ 의장

- 굳이 임차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보안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근처 건물을 임차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실정임. 현재 대구가정법원 앞 건물이 상가인데, 가정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간사의 답변이 있었음
 - 이광만 위원
 - 테니스장 부지 면적이 너무 작은 것 같음. 400평이 안 되는 부지에 18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 간사
 - 18층은 최대 건축 규모를 의미하는 것임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청사 사정이 시급하기 때문인데, 제3부지로 이전 하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실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과연 그 시급성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그런 차원에서 2안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으나 일단 결단을 내리면 별관 건물을 짓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음. 18층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춘천법원 장 재직 시절 겪어 보니 지하 없는 3층 건물은 4~5개월 만에 지을 수 있었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수원가정법원을 현재 짓고 있는데, 짓기 전에는 동수원등기소와 가사과가 함께 있어 좁고 불편했음
 - 별도 청사가 주는 상징성이 있음. 비록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신청사를 하나 가 지면 직원들도 편해지고 가정법원의 위상도 제고될 것임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로서는 2안과 3안이 가장 검토할 만한 안인 것 같음. 적정규모가 연면적 5,000평이라면 연면적 7,000평인 18층 증축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면접교섭센터가 급하니 가건물을 짓고 가정법원이 사용하다가 추후 서부지원이 사용하고, 새로운 후보지는 계속 물색하는 등 2안과 3안을 수정·보완하는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질문, 이에 대한 의장 및 운영지원단장의 답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2안은 테니스장 부지에 증축을 한 후 다른 부지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가정법원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2안을 선택하면 3안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인지?
 - 의장
 - 현실적으로 2안에 의해 테니스장 부지에 증축을 하는 경우 별도의 가정법원 독립 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함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2안과 3안은 양립이 불가능함. 전체적으로는 대구가정법원보다는 부산가정법원 사정이 시급한데, 재정당국 역시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 에 증축을 한 후 추후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 최한돈 위원
 - 그렇다면 본인의 견해를 3안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도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좋은 것 같음. 가정법원의 경우 여러 특수한 시설이 종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서는 일정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테니스장 2면 가지고는 굉장히 옹색한 건물 밖에 될 수가 없음
 - 따라서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제3후보지에 제대로 된 가정법원을 신축하는 방향 으로 가되, 부속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위 건물을 임차하거나



가건물을 짓는 방안에 찬성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안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될 때까지는 면접교섭센터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함. 면접교섭센터의 경우 많은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접교섭이 편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만 갖추면 되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지 못해 몇몇 법원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음. 면 접교섭센터는 주말에도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먼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3후보지로 이전하되, 이전이 될 때까지는 임차 이외
 에 가건물을 짓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윤준 위원
 - 추후 제3후보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부족해 임차라도 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따라서 면접교섭센터처럼 필요한 시설은 불편하더라도 임차할 필요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가정법원의 특수성, 면접교섭센터는 법원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진다는 상징적 인 의미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면접교섭센터를 임차해서는 안 될 것 같음
 - 3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음

다.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본 주제는 대전법원이나 대전법원 노동조합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임.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법원 내부에 공 간까지 생겨 법원 내부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분과위원회에



서도 안건으로 올린 것 같음

- 참고로 현재 대전법원 어린이집 건물은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3, 4층은 독신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집 정원은 73명, 현원은 42명임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
 - 내부위원들께서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외부위원으로서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함
 - 우리나라의 기관 또는 회사에 어린이집을 제대로 갖춘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훌륭한 어린이집이 몇 km 떨어져 있다고 다시 옮겨달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음

- 검찰청 어린이집은 내부에 마련되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견종철 분과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지금 몇 명 정도가 이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 견종철 위원
 -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불편하다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먼 곳에 아이를 맡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왕복 2.6km를 뛰어가야 하다 보니 어린이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 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더구나 검찰청 어린이집은 청사 내에 설치되어 편리하 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보면 더 그럴 것 같음
 -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 특히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린이집이 테니스장 부지로 이전되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잘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이전 요구가 있는 것은 그래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음. 비록 예산 마련 방안이 없다고 하나, 만약 방안이 있다면 이전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1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마 거리가 멀어 활용도가 낮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 같음
 - 기존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비록 희박하지만 이전이 가능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경우 에는 반드시 청사 내에 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린이집이 없는 법원과 비교 도 해야 해서 쉬운 사안은 아닌 것 같음. 현실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정도로 불편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몇몇 법원 어린이집이 다소 먼 곳에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을 만들 때 대부분 법원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떨어져도 길 건너 정도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음
 - 대전법원 어린이집의 경우 부지가 없어 떨어진 곳에 신축했는데, 대전법원 별관 을 지으면서 여유 공간이 생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음
 - 일단 크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 하도록 하겠음

라.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신축 및 증축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임. 자료집 233쪽에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 중 대구가정 별관 은 빠지게 되는 셈임
 - 울산지방법원 증축 수요가 생기게 된 것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



될 경우를 대비한 것임. 이 경우 울산지방법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울산가정 법원이 나가야 할지 아니면 옥상을 증축해서 사용할지가 쟁점인데 대구가정법원 청사이전 문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만약 옥상 증축을 하게 되면 울산가정 법원이 사용할 별관을 짓는 것은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다는 점은 들으신 바와 같음

- 순위 등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간사, 이광만 위원,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방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대구가정법원이 부산가정법원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이 야기했고, 자료집에도 울산가정법원보다 부산가정법원이 더 협소하다고 나와 있는데 부산가정법원의 증축 계획은 왜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함

○ 간사

- 증축 사업은 각 법원의 수요를 법원행정처에서 파악하여 진행하는데, 부산가정 법원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광만 위원
 - 본인이 작년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했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가정법원이 빨리 독립청사를 확보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부산가정법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여유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음

- 또한 현재 부산광역등기국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1년에 완공이 되면 현재 청사에서 등기 관련 시설이 빠져나가 공간이 더 생기게 됨. 또한 현재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전할 의사도 없으리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지역에 법원이 언제 들어서게 되는지는 지역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부동 산 투기와도 관련이 있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본인은 법원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증축 사업이 진행되는지, 연도별 사업순위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음. 이런 점을 보 시면 외부위원들께서는 사법행정이 상당히 투명해졌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간사, 의장, 운영지원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제천이 1순위였지만 부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4순위로 내려간 점이 안타까움. 제천의 경우 부지 확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 감사

• 법원행정처에서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음. 각급 법원으로부터 부지 추천을 받고 있는데, 각급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거나 추천을 받고 있음. 법원이 주도적으로 부지를 검토하거나 지정하지는 않음

○ 의장

- 딱 들어맞는 공용부지가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상황은 그렇지 못함. 지목변경이 나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에는 LH공사가 사업을 많이 해서 LH공사와 협조를 많이 하는 편임
- 제천지원이 1971년 준공되어 현재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관리를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사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나 일선법원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발 벗고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음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의정부지방법원 이전은 위탁개발형식을, 성남지원 이전은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음
- 제천지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적정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음. 기존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도 용이하지 않고, 실제 이전을 위해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사유로 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있음

○ 의장

■ 보통 법원이 이전하는 경우 검찰청도 같이 이전하게 되는데, 같이 이전을 하려



다 보니 법원 부지뿐만 아니라 검찰청 부지도 필요하고, 또 검찰에서는 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같은 시설도 함께 이전하려 하다 보니 지역주민과 마찰도 있곤 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간사와 운영지원단장의 답변이 있 었음

○ 김진석 위원

• 창원가정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법원 신설에 관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순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간사

•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규칙 규율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법원 신설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할 수가 없었음

○ 운영지원단장(기획조정실장)

- 창원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법사위 소위에서도 거의 논의가 되었다가 갑작스럽게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싶음. 하지만 12월 법사위에서 법원 신설을 논의하고 의결할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확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음
-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되도록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인천도 도시가 워낙 성장하다보니 또 다른 지원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올해부터 인천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 문제로 인해 1개 재판부밖에 설치를 못해 민사재판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건물의 신축이나 이전 역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인식하고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구가정법원 별관을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의 안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음



마. 결정사항

- 대구가정법원 청사 이전 신축 여부
 - 대구가정법원 독립청사 신축 필요성은 인정되고, 신축 위치로는 제3후보지로 이 전하는 방안이 타당함. 다만, 현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안건은, 현재로서는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함
 - 향후 어린이집 신축 시에는 가급적 청사 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 2021년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과 그 우선순위에 관하여, ① 춘천지법 신축, ② 의성지원 신축, ③ 충주지원 신축, ④ 제천지원 신축, ⑤ 울산지법 증축, ⑥ 밀양 지원 증축의 순서로 추진하기로 함

10.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견종철 분과위원 기초발제
 - 대법원규칙인「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을 행정부의 그것과 일 치시킬 것을 제안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차량교체 신청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교체기준 수리비 산정기준을 실 거래 가격으로 현실화하며, 최대운행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이야기하고 있음. 의견 있 으면 말씀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견종철 분과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전용차량 배치에 관한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 것인지?
- 견종철 분과위원
 - 전용차량에 관해서는 아직 안건 심의를 시작하지 못했음. 다음 회의 때는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정부 기준과 같이 가자는 취지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용차량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3월 말까지 개선작업을 하라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3월 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분과위원회 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관련 절차를 거쳐「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을 행정부의「공용차 량관리규정」(대통령령)과 같이 개정하기로 함
- ※ 15:20경 정회
- ※ 15:35경 속개

11.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향후 계획

- 가.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박노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난 회의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의견을 듣고 기준을 검토한 결과 10명의 위원을 모시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법원 내부 위원은 2인 정도로 최소 화했고, 모두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했



음. 변호사 2명 중 1명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하였고, 법무부에서 검사를 추천받음은 물론 학계 3명 중 서보학 교수님은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경력이 있어 학자 겸 시민단체 인사로서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순수한 시민단체 소속으로서 강정화 회장님을 모시게 되었음. 국회에서도 1명 정도를 위촉할 생각인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임. 사실 지방에 계신 분을 더 모시고 싶었는데 여의 치 않아 아쉬움이 있음. 결국 지방에서는 부산권의 조충영 변호사님만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어떤 결론을 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또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을 만들되, 그 안이 하나가 아니더라도 순위를 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대를 하고 연구·검토사항으로 부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구성을 포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보수언론 측 한 분, 진보언론 측 한 분 정도로 하여 언론계에서도 적절한 분들 이 참여했으면 좋겠음

- 국회에서 한 분을 모시게 되면 11분이 되는데, 15명까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논의 과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을 것 같음
- 대법관 워크숍에서도 논의를 진행했는데, 비슷한 의견이 나온 바 있어 향후 위 워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학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5 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분을 더 모시는 방안을 검토 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 이에 대한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한돈 위원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전 대법원장님 임기 중 상고법원 추진을 하다 좌절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대규모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 차를 거쳤으면 좋겠음

○ 윤준 위원

• 향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정할 일이긴 하나, 공청회를 법원이 주관하는 경우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공청회를 주관하고, 법원과 학계는 패널로 참석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음

-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뼈아픈 경험으로 인해 법관 위원 수도 최소한으로 했고, 상고허가제를 주장하는 정선주 교수님 이외에는 모두 다른 견해를 가진 분을 모셨음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역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이므로 구성되는 대로 그 경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공청회와 같은 국민여론 수렴 방안, 의견수렴의 주체 및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림. 특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
-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되면 여론조사 등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15명 위원 정수를 다 채우지 않고 공백을 둔 것임. 위원회의 성격상 종기를 두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활동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한 후 그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결론을 낼 시한을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대한 보고서들을 위원들에게 배부해주면 참고
 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 이번에는 정말 철저한 연구 및 준비를 거쳐 개선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고서를 보완해서 철저하게 입법례 조사가 됐으면 좋겠음
- 공청회는 변호사협회 단독 혹은 변호사협회와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관련 학회에서 자발적인 공청회, 학술세미나 등도 개최될 수 있을 것 같음.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고, 어느 정도 여건과 준비가 되었을 때 대법원 단독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주최하는 공청회 진행이 적절함

○ 의장

- 그 동안 학계 분들과 간담회도 진행했었고, 관련 워크숍 등에서 사용된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위원들께는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음. 이전 자료들을 종합해서 위원들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음
- 보내드릴 자료에는 말씀하신 입법례,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 나타나 있고, 상고허가제부터 대법관 증원까지의 방안이 망라되어 있으 므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2020년 상반기까지 회부된 연구·검토 사항 모두를 보고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때까지 연구·검토된 내용만 보고받는다는 취지인것 같음. 하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연구·검토사항을 회부하면 대략적으로어떤 단계를 거쳐 어느 시점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은설정해야 하며, 분과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함

-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 위원회로 하여금 3월 정기회의 때 그 동안의 연구·검토 경과 및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김순석 위원
 - 상고제도 개선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진



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 같음.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논의의 효율성인데, 아무래도 가장 편한 채널은 학회라고 생각함. 상고제도에 관한학술대회를 통해 색안경을 끼지 않고 순수하게 제도 자체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이고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위원 구성 관련, 학계 분들은 헌법 교수 2명, 형법 교수 1명, 민소법 교수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소송법 교수님이 한 분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음. 또한 추후 예산 확보 등 정부의 협조를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측 인사도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의장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몇 가지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국회 입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정부 인사까지 참여하는 예전의 사법개혁위원회 또는 사법 개혁추진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꾸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단 모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화를 위해 저변을 더 넓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을 추가로 모실지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일단은 보고된 것처럼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3월 정기회의에서 향후 로드맵을 보고하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음. 3월 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그에 따라 가능하면 12월 정기국회 전까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있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위원회 구성 관련
 -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함(총 11명)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법관 2명
 -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 전문성, 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 5명
-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추가 예정

■ 회부 안건 관련

- 위원회에 아래 세 가지 안건을 회부하기로 함
 - ①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 ②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연 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실시 포함)
 - ③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반드시 단일 방안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 향후 일정 관련

○ 2020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 시 그때까지의 위원회 연구·검토 결과와 그 이후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하여 중간보고할 것을 요청

12.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 제안위원: 최한돈(대표제안), 김진석,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가나다순, 이하 같음)

가. 대표제안 위원 제안설명

- 최한돈 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요청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분과위원 회 설치를 제안함
 -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고 질적인 법관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 합리적인 법원공무원 정원배정 기준, 법원구성원 수당제도 개선 등을 연구내용으로 함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법원공 무원 직급구조 개편 방안, 법원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 을 연구내용으로 함

나. 법원행정처 담당자 기초보고



- 도형기 인력운영심의관,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위원회' 설치(안)을 보고함
- 박상우 인사운영심의관,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경과를 보고함

다. 토론

- ※ 비공개 결정에 따라 토론 결과의 요지만을 기재함
- 위원들은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와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과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음
-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논거
 - 법원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아니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연구·검토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있어야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음
 -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는 법원공무원이 원해서 설치하는 법원공 무원을 위한 분과위원회라고 할 수 있음. 법원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서도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집행의 문제라고 모두 배제할 필요는 없음
 - 현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장기적으로 외국의 예와 비교하 여 근무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동조합과의 협약 전에 선제적으로 근무조 건 개선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설치해도 좋다 고 생각함
 -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당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지 의문이 들고, 성평등 내지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함
-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의 논거
 -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각 법원 및 직급에 따라 다르고, 예산과도 연관성 이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기한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음

- 근무조건 개선은 집행의 문제이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상설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분과위원회가 다론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 근무조건 개선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과위원 회 설치 목적과 맞지 않고, 설치하더라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 기도 어려움
- 노동조합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행이 되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을 분과위 원회에 건의하려고 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행 정자문회의를 통해 하향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성격, 법관과 법원공무원과의 관계와 도 연관이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음
-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현재로서 분과위원회는 가급적 특정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고, 상설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른 여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급한 과제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결정사항

-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①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과 ② '법원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방안' 총 2개 안건을 회부하여 연구·검토하도록 함
- 2개 안건 모두 보고 시한을 2020. 4. 말까지로 정하고, 2020. 5. 예정된 사법행정자 문회의 임시회에서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함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음
- 함께 제안된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는 그 연구내용이 분과위원회



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대부분 노사협의의 대상이므로 당장 설치하지는 않되,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회부할 만한 적절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 설치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13.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 제안위원: 김진석(대표제안), 박균성, 오승이, 이광만, 최한돈

가. 대표제안 위원 제안설명

■ 김진석 위원,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 방안을 안건으로 부의하여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본인이 고등부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부장은 그렇지 않은 것은 양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임. 고등부장은 선발을 했기 때문에 법관 관료화 내지 줄세우기가 문제가 됐지만, 경력 15년이 되는 법관은 일률적으로 지방부장이 되기때문에 지방부장은 관료화와 큰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발제문을 보시면 지방부장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4.66%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역시 44%나 나오는 것처럼 고등부장 폐지와 같이 압도적인 의견 차이가 나오고있지도 않음
 -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지방부장 폐지에 관한 입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찬성했지 만,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부장 폐지가 당장 시급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 을 수 있어 차제에 논의하려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임용이 정착된 후 지방부장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과제가 많은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본 안건이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양 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되 연구시한을 2020. 6. 30.까지보다는 장기과제로 연구·검토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 고등부장과 지방부장이 다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불렸으면 좋겠고, 합의부의 재판장의 경우 '재판장 판사'정도로 호칭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부장판사라는 직위가 있음으로 인해 부장판사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장판사가 아닌 평판사는 상대적으로 하향되는 측면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지방부장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지방부장 제도의 폐해라고 지적되는 실질 대등 합의가 어렵다는 점은 다른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지방부장이 됐다고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방부장이 된다는 점이 해당 판사에게 자부심과 사기를 고양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 타이틀마저 없애버리면 지금 현재 부장판사를 하고 있거나 곧 부장판사가 될 판사는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임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함. 다만 오랜 기간 경력 있는 부장판사와 경력이 낮은 배석판사가 합의부를 이루는 형태 가 효율성, 교육적 차원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본인 역시 당장 부장판사를 폐지 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합의를 위한 좋은 재판을 위해 이제 다시 새로 논의 해볼 때가 되었다는 취지임
- 이광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구·검토 시한은 충분히 유연하게 장기 과제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법원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부장판사 유지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 결과가 나오면 수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 대등합의를 위해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함

- 지방부장 직위를 폐지하면 이미 부장판사이거나 곧 될 분들은 상실감을 느끼겠지만, 현재 단독판사나 배석판사는 부장판사 제도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판사가 되려고 법원에 왔지 부장판사가 되려고 법원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장기적으로 모두 다 같이 판사로 불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마침 판사님 몇 분하고 모임을 가질 기회가 있어 여쭈어봤는데, 각양각색의 의견을 주신 것을 보면 법원 내부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음
 - 이상적인 방향은 이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부장 역시 폐지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시기라고 생각함. 단기간 내 모든 사항을 개혁하면 좋지만, 고등부장 폐지 법률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방부장 폐지 여부는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행 법원조직법 하에서 지방부장은 순수한 보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급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본인은 줄곧 고등부장 폐지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 논리적 귀결상 지방부장 폐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음. 게다가 본인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에 있을 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장님께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임
 - 하지만 법관 관료화의 폐해의 근원은 고등부장 제도에 있는 것은 명백한데, 본 발제는 제도적 모순이 없는 지방부장 폐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주종이 바뀌 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고등부장 제도는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 폐지되어야 하고, 이광만 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지방부장 역시 직급제로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적 으로는 고등부장이든 지방부장이든 법원조직법의 규정대로 순수하게 보직 개념 으로만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부장판사가 있음으로 인해 합의부 내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부장 역시 폐지에 찬성을 하지만, 국민들도 과연 지방부장 폐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은 경력이 많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이 유로 경력대등재판부를 지방부장 이상급 판사로 구성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부장판사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어되는 측면이 있으므 로, 안타깝지만 지방부장 폐지 논의는 장기과제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국민은 합리적·객관적 시각과 지혜를 겸비한 판사로부터 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길 원하지 '부장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길 원하는 것은 아님
- 우리 사회가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지방부장이라는 직함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함. 경력이 높은 판사와 낮은 판사가 합의 부를 구성하고 경력 높은 판사가 이끄는 대로 재판부가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하 는 것은 결국 부장판사 제도를 둠으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함
- 지방부장 제도가 고등부장 제도와 동급을 이룰 정도로 폐해가 심한 것은 아니지 만 지방부장 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배석판사들은 그런 점을 느끼고 이야 기하기도 함. 물론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좋은 재판을 위한 실질 합의를 위해 지방부장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폐지 시점을 정 하는 것도 논의를 통해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는 지금 시작해야 한 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것임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조경력이 10년에 가까운 분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분들의 법원 조직에 대한 이해 또는 판결문 작성을 위해 절대자가 아닌 운영상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방부장 제도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주고



업무를 더 부과하는 성격도 있어 굳이 지금 지방부장 제도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모든 판사가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지고 임용되어 서로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방부장이 의미가 없고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그 때까지는 지방부장이 신규인력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 '판사'라는 명칭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지방부장 제도 도 없어지는 것이 맞지만, 향후 운영 상태를 볼 필요가 있어 조금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하다고 생각함

다. 결정사항

■ 위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내년 상반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 였음

14.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 건의

※제안위원: 오승이(대표제안), 김진석, 박균성, 이미경, 최한돈

가. 대표제안 위원 제안설명

■ 오승이 위원,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 분과위원회당 2인 이상의 추천을 의뢰하도록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제8조 제6항의 개정 건의를 제안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유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오승이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건의 내용에 따를 경우 전국법원장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의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임. 전국법관대표회의에만 추천 의뢰할 의무를 의장에게 부과하기 보다는 현재처럼 개방해 놓고 필요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뢰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오승이 위원
 - 전국법원장회의 등에 추천 의뢰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음.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집중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오승이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혹시 현재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 오승이 위원
 - 그렇지는 않음. 다만 상황에 따라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될 우려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 및 질문, 이에 대한 간사의 답변 및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제안자에 본인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 자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님
 - 제안의 취지는 법관과 관련이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임명되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음. 하지만 모든 분과위원회에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의뢰할 수 있다'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음
 -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시 항상 공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분과위원 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함
 - 간사
 - 이미 구성된 3개 분과위원회는 모두 공개신청을 받았음
 - 박균성 위원
 - 그렇다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상당히 중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 같음. 따라서 현행 규정 하에서 그와 같이 운영하거나 또는 규칙 에 추천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법원장께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추천 의뢰를 하는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반드시 추천을 할 텐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의 추천 의뢰 없이 공개신청만 받는 경우 판사들이 워낙 바쁘다보니 추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음



- 윤준 위원께서 전국법원장회의와의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와 전국법원장회의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판사 들의 대표모임인 반면,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권자들의 회의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8조 제6항 후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 추천 의뢰를 하시면 추천 은 다 되겠지만, 대법원장님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무성을 부과하는 정도의 취 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오승이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제안하신 내용은 대법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껄끄러워 패싱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추천 의뢰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최종적인 인선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님이 결정한다면 추천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규정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음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명시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등도 추천 의뢰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만 분과위원회마다 2명을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음
 - 오승이 위원
 -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추천 작업은 쉽지 않은 일임. 그럼에도 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법행정에 일선 판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전국법원장회의는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대법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추천의뢰를 하실 것 같아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님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현재 사법행정회의가 아닌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굳이 전국법 관대표회의에 대한 추천 의뢰 의무 조항을 두기보다는 현행 조항에 따라 조화롭 게 운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박균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경우 굳이 의무조항이 없어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묻거나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으리라 생각함. 전국법관대표회의만 명시하는 경우 다른 기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더라도 실제 규칙이 개정 되려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이 금년 8월에 만 들어졌는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개정하자고 하면 현재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없 는데 왜 바꾸려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임. 따라서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 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식으로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할 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만 명시하는 것은 최소 전국법원장회의, 전국공무원노동 조합 법원본부와의 균형에도 맞지 않은 것 같으므로 괜찮으시면 장기과제로 두 는 것이 어떨까 싶음

다. 결정사항

■ 현 단계에서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추후 필요한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함

15. 기타 개별 위원의 의견제시

- 다음과 같은 취지의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차세대 전자소송 및 미래등기 사업은 그 내용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별다른 견제 없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견제를 받아야 함
 -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에 관한 규정(예: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차제에 정비를 해야 함
- 이에 대하여 윤준, 김순석 위원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않은 위원의 개인적 의견제시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논의를 해야 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음. 정식 안건도 아닌데 논의되고 회의록에 기재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나. 결정사항



■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안건으로 부의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16.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차 회의록 작성시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안건에 관한 위원들의 토론 내용 및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 의' 안건에 관한 일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0. 1. 2.(목) 15:00

■ 장소: 대법원

(끝)